

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

1997. 3. 7. 제정

2016. 2. 26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0.25.>

제2조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에 둔다. <개정 2012.10.25., 2016. 2.26>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학교 체육, 엘리트 체육 및 생활 체육 전반에 걸친 이론적 연구와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실천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2.10.25.>

1. 체력검사, 운동처방, 트레이닝 등 전반적인 체력관리에 관한 사업
2. 대학과정의 교양체육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
3. 운동 중 발생하는 상해의 예방·처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
4. 등산, 수영, 스키 등 야외활동 교육에 관한 연구
5. 연구지 발간, 연구발표회,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
6.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의 수행
7. 여성체육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 및 사업의 수행 <신설 2012.10.25.>
8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4조(소장·부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0.25., 2016.2.26.>

③ 소장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2.10.25., 2016.2.26.>

제5조(조직) ① 연구소에 스포츠과학연구부, 글로벌스포츠문화연구부, 스포츠산업·경영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. <개정 2012.10.25.>

② 스포츠과학연구부는 운동행동연구 분야, 운동경기력 분야, 운동상해 예방 및 처방 분야, 체력 및 건강관리, 운동지도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초 및 응용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2.10.25.>

③ 글로벌스포츠문화연구부는 엘리트스포츠 및 생활 체육과 관련된 정책 분야와 학교 체육 및 스포츠 교육 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2.10.25.>

④ 스포츠산업·경영연구부는 레저스포츠분야, 스포츠 산업 및 경영분야, 스포츠 마케팅 및 미디어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2.10.25.>

⑤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6조(부장)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다.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0.25., 2016.2.26>

② 각 부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7조(연구위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2.10.25., 2016.2.26>

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2.10.25., 2016.2.26>

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9조(직원) ① 연구소에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직원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하되, 직원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2.10.25., 2016.2.26>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2.10.25>

② 위원회는 신산업융합대학장, 소장, 부소장 및 소속 대학 교원 중에서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된다. <개정 2012.10.25., 2016.2.26>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산업융합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

총장에게 다음 사업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0.25., 2016.2.26.>

1. 당해 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

2.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
제12조(경비 및 현금 출납) ①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에서 지급하는 연구비와 외부로부터의 연구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6.2.26.>

부칙 <1997. 3. 7. 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대학 보건체육연구소규정은 폐지한다.

부칙 <2003. 2. 7. 전문개정>

이 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0. 25. 개정>

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2. 26. 개정>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